

변리사 시험 2차 대비

# 조현중 특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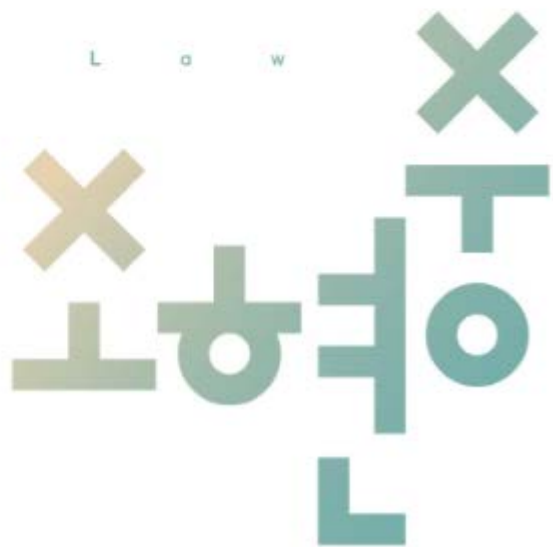
2차 기출문제집

제3판



P a t e n t L a w

변리사 조현중



**PREFACE**

본 교재는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기출문제집입니다.

변리사시험 제50회부터 제59회까지의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제6회부터 제10회까지의 기출문제 중 일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여 수정 완료되어 있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0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CONTENTS**

/ 제1장 · 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기출문제 / \_ 2

/ 제2장 ·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기출문제 / \_ 14

/ 제3장 · 2015년도 제52회 기출문제 / \_ 25

/ 제4장 · 2016년도 제53회 기출문제 / \_ 51

/ 제5장 · 2017년도 제54회 기출문제 / \_ 76

/ 제6장 · 2018년도 제55회 기출문제 / \_ 110

/ 제7장 · 2019년도 제56회 기출문제 / \_ 139

/ 제8장 · 2020년도 제57회 기출문제 / \_ 157

/ 제9장 ·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기출문제 / \_ 186

/ 제10장 ·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기출문제 / \_ 212

/ 제11장 · 2017년도 제6회 변호사 시험 / \_ 234

/ 제12장 · 2018년도 제7회 변호사 시험 / \_ 241

/ 제13장 ·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 시험 / \_ 246

P A T E N T L A W

---

**조현중 특허법**

**2차**

**기출문제집**

---

## 01

## 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기출문제

## 문 제·01 (30점)

甲은 영어로 된 아래의 [발명의 설명] 및 [청구의 범위]로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PCT출원을 2011년 6월 1일자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수리관청으로부터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나, 본 발명이 물질 발명에 관한 것으로 도면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상기 통지에 대한 의견을 지정기간 내인 2011년 8월 5일자로 제출하였다.

## [발명의 설명]

실시에 1은 A 또는 a 수단에 의하여 반복 배양되는 줄기세포 P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2는 줄기세포 P를 이용하여 손상된 인간의 세포를 복원시키는 치료 방법에 관한 것이다.

## [청구의 범위]

제1항 A 수단에 의하여 반복 배양되는 줄기세포 P

제2항 줄기세포 P를 이용하여 손상된 세포를 복원시키는 치료방법

그 후, 甲은 국제조사기관으로부터 제1항과 제2항은 단일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甲은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에 국제조사보고서상의 특허요건 및 기재요건을 충족시키고자, [발명의 설명]에 "실시에 3은 줄기세포 P를 이용하여 손상된 동물의 세포를 복원시키는 치료방법에 관한 것이다"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고, [청구의 범위] 제1항에는 "a 수단에 의하여 반복 배양되는 줄기 세포 P"로 보정(단, a는 A의 하위개념임)을 하였고, 제2항에는 "줄기세포 P를 이용하여 손상된 동물의 세포를 복원시키는 치료방법"이라고 동물로 한정하는 보정을 하였다.

甲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고 지정국인 한국특허청에 국내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위 사실만을 근거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1) 甲이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국제출원일과 연계 하여 설명하시오. (5점)
- (2) 甲이 지정국에 국내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 (7점)
- (3) 국내절차의 심사관 입장에서,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이루어진 보정에 대한 적법성의 여부를 설명하시오. (12점)
- (4) 甲이 국제조사기관의 단일성 판단에 대한 추가수수료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적효과를 설명하고, 국제조사기관에서의 단일성 판단결과가 지정 국의 심사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 문 제·02 (20점)

甲은 아래의 [발명의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특허출원하였다.

## [발명의 설명]

본 발명은 폴리에틸렌수지의 표면을 산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산은 황산(A) 또는 질산(B)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 [특허청구범위]

제1항 폴리에틸렌수지의 표면을 산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법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산은 황산(A)인 방법

출원인 甲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 제2항을 "제1항에 있어서, 산은 황산(A) 또는 질산(B)인 방법"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 후 甲은 심사관으로부터 "산과 질산(B)은 이견 출원 전에 반포된 선행문헌으로부터 진보성이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최후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다음과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였다.

## [특허청구범위]

제1항 폴리에틸렌수지의 표면을 황산(A)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법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황산(A)에 의하여 처리한 후 염산(C)에 의하여 더 처리 하는 방법

상기 보정에 대하여, 심사관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보정각하결정서를 받았고, 동시에 이견 출원은 선행 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결정서를 송달 받았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기재요건은 적법하고, 염산(C)은 질산(B)에 비해 신규한 것으로 간주함)

- (1) 甲이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 한 보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 (2) 심사관이 판단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 (3) 甲이 이견 출원을 특허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문제 - 1]****I. 설문 (1)에 대하여****1. 문제의 요지**

PCT 절차에서는 도면 미첨부를 방식요건 하자로 보지 않으며, 의견서 제출은 출원일자 특정과 무관하게 취급하는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2. 국제출원일 의의**

PCT 출원서가 수리관청에 접수된 날을 국제출원일이라 한다.

**3.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않거나 늦춰지는 경우**

- ① 방식요건 하자로 보완명령 또는 보정명령을 받으면 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출원이 취하간주될 수 있다.
- ② 도면 미첨부는 방식요건 하자는 아니다. 다만 도면 미첨부 취지 통지에 대응하여 도면을 새롭게 제출하면 국제출원일이 늦춰질 수 있다.

**4. 구체적 판단 및 결론**

2011. 8. 5. 자 의견서는 도면을 새롭게 제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甲 PCT 출원의 국제출원일은 2011. 6. 1. 이 된다.

**II. 설문 (2)에 대하여****1. 문제의 요지**

PCT 제22조를 기초로 한 특허법 제203조 등의 국내단계진입 절차에 관한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2. PCT 출원 의의**

PCT 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서 국제출원일을 인정 받은 다음, 국제단계를 거쳐, 각 지정국으로 국내단계진입하여 개별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하는 절차를 말한다.

**3. 국내단계진입절차**

(주체) 국제특허출원인이 (기간)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 (서면)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의 국어번역문을 첨부한 특허법 제203조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특허법 제203조, 제201조). 그 밖에 외국어로 PCT 제34조 보정을 했다면 기준일까지 이의 번역문도 제출해야 한다(특허법 제205조).

**4.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의 국어번역문은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5. 청구범위 번역문 대체**

PCT 제19조 보정이 있는 경우는 청구범위 번역문을 PCT 제19조 보정 후 청구범위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PCT 제34조 보정이 있는 경우는 대체가 불가하다.

**6. 위반시 취급**

기간 안에 특허법 제203조 서면, 요약서 등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특허법 제203조),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간주(특허법 제201조), PCT 제34조 보정의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이

|   |
|---|
|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205조).  |
| <b>7. 구체적 판단 및 결론</b>   |
| (주체) 甲은 (기간) 국내서면제출기간인 출원일부터 2년 7월까지 (서면)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과 함께, 국제출원일에 영어로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과, PCT 제34조 번역문(외국어로 보정한 경우)을 대한민국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 <b>Ⅲ. 설문 (3)에 대하여</b>   |
| <b>1. 문제의 요지</b>  |
| 신규사항추가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
| <b>2. 신규사항추가 금지 의의</b>  |
| 명세서 보정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신규사항추가 보정은 부당한 출원일자 선점이 되어 금지된다.   |
| <b>3. 신규사항추가 금지 판단기준</b>  |
| <b>가. 판례의 태도</b>  |
| 법원은 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아 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 신규사항추가가 아니라고 본다.                         |
| <b>나. 검토</b>  |
| 명세서 등은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바 판  |

|   |
|---|
|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 <b>3. 불특허발명</b>   |
| <b>가. 불특허발명 의의</b>  |
|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 <b>나. 의료행위의 불특허발명 여부</b>  |
| <b>1) 판례의 태도</b>  |
| 법원은 발명을 실행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경우 특허법 제32조에 해당한다고 본다.                            |
| <b>2) 검토</b>  |
|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목적에 우선하는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절대적 가치에 반하므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
| <b>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b>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안검 수술방법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수술행위가 아니므로, 甲의 출원발명은 불특허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b>Ⅳ. 설문 (3)에 대하여</b>   |
| <b>1. 문제의 요지</b>  |
| 학위논문은 도서관등에 입고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되  |

|   |
|---|
| <p>었을 때 그 내용이 공지된 것이라고 보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p>  |
| <p><b>2. 반포된 간행물 의의</b></p> <p>출원 전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p>   |
| <p><b>3. 학위논문의 공지 시점</b></p> <p>가. 판례의 태도</p> <p>법원은 학위논문은 일반적으로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도서관등에 입고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되었을 때 그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보고, 반포시점 이전인 도서관에서의 등록시 곧바로 공지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p> <p>나. 검토</p> <p>사전적으로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다수인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간행물을 말하는바, 문언해석상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p> |
| <p><b>4. 구체적 판단 및 결론</b></p> <p>甲의 논문은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채 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므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의 출원발명은 신규성 요건을 충족한다. 끝</p>   |
| <p><b>V. 실문 (4)에 대하여</b></p>  |
| <p><b>1. 문제의 요지</b></p> <p>의료행위에 사용되는 물건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정하지</p>  |

|   |
|---|
| <p>않는 등의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p>   |
| <p><b>2. 산업상 이용가능성</b></p> <p>가. 의의</p> <p>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경제적 풍요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이용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말한다. 특허법은 산업발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대상을 산업과 연관된 발명으로 한정한다.</p> <p>나. 의료행위용 물건의 산업상 이용가능성</p> <p>1) 판례의 태도</p> <p>법원은 의료산업발전보다 중요한 인간의 존엄이라는 절대적 가치고수 위해, 의료행위는 산업이지만 예외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정하나, 그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물건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한다.</p> <p>2) 검토</p> <p>특허법 존재의의 고려시 판례의 태도와 같이 특허대상의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 참고로 미국 등은 의료행위 또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하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있다.</p> <p>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p> <p>甲의 수술용 바늘은 의료산업에 관한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충족된다.</p> |



|   |
|---|
| <b>3. 신규성</b>   |
| 가. 의의   |
| 신규성이란 출원 전 공지등으로 인해 공용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특허권은 출원으로써 새로운 창작을 공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신규성 없으면 특허권 인정되지 않는다.            |
| 나. 판단방법   |
| 1) 판례의 태도   |
| 법원은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차이점이 있어도 주지관용기술의 부가·변경·삭제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차이가 없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본다.                            |
| 2) 검토   |
| 신규성이란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의 새로운 창작을 뜻하며, 새로운 효과차이가 없는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등은 새로운 창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
| 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  |
| 甲의 바늘은 새롭게 만든 고리형으로서, 길이가 짧고, 수술을 쉽고 빠르게 하며, 수술자국을 작게 하는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하므로, 공연실시 등으로 甲의 바늘 자체가 공지된 바 없다면, 신규성 충족된다. |
| <b>4. 진보성</b>   |
| 가. 의의   |

|  |
|--|
| 진보성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한다. 이는 신규성이 있어도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이 난립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해 태동되었다. |
| 나. 판단방법  |
| 1) 판례의 태도  |
| 법원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용발명으로부터 예측 곤란한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진보하다고 본다.   |
| 2) 검토  |
|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를 가진 발명은 산업발전에 일조하므로,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와 같이 진보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다. 구체적 판단 및 결론   |
| 甲의 새롭게 만든 고리형이 신규성 있고, 아울러 그 고리형으로 인해 수술자국 작게 하는 현저한 효과 등이 예측 곤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진보성 충족된다. 끝                         |
| 이하야백   |

변리사 시험 2차 대비

출판사 홈페이지  
job.willbes.net

조현중  
특허법

P a t e n t L a w

# 조현중 특허법

2차 기출문제집

제3판 | 변리사 조현중

정가 15,000원



이 책은 도서출판 윌비스가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행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본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